

의안번호	2213050
의 퇴 인	안태준 의원
회 답 일	2025. 11. 10.
추 계 번호	25F48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및
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4조의36 (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 공제대상: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또는 출자한 제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제3자물류: 화주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는 방식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10% - 적용기한: 2030.12.31.	
2	안 제104조의37 (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기업의 해외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신설 - 공제대상: 해외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 - 해외 제3자물류비용 요건: ① 해외 물동량 비중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 ② 제조업 기업이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물류기업에 지출한 비용 - 공제율: 기업규모별로 해외 제3자물류비용의 5~7% ※ 중소기업 7%, 중견 및 대기업 5%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5%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4조의36(해외 물류인프라 구축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4조의37(해외 물동량의 제3자물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 등을 위해 해외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또는 해외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경우 투자금액 또는 제3자물류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4조의36 및 제104조의37 신설)
 - 안 제104조의36은 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자회사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
 - 공제대상: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또는 출자한 제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 제3자물류(「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0호): 화주가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하는 방식
 - 외국자회사 요건: 투자일 기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출자
 - ※ 내국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30% 이상 출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10%
 - 적용기한: 2030.12.31.
 - 안 제104조의37은 기업이 지불하는 해외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를 신설
 - 공제대상: 해외 제3자물류비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기업
 - 해외 제3자물류비용 요건:
 - ① 해외 물동량 비중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이상
 - ② 제조업 기업이 3년 이상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국내 물류기업에 지출한 비용
 - 공제율: 기업규모별로 해외 제3자물류비용의 5~7%
 - ※ 중소기업 7%, 중견 및 대기업 5%
 - 공제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의 15%
- 안 제104조의36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기업이 물류기업 인수 등을 위해 외국자회사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금액과 공제대상인 기업의 법인세액 등의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

의 요건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기초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은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 및 출자의 요건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를 인정받는 투자 및 출자의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또한,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해외 물류기업 인수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외국자회사에 대하여 시행하는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현황자료 등이 필요하나,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대상이 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연도별 총량 등의 통계는 있으나, 투자의 목적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투자액 중 공제대상의 비중 등 정보를 추정할 수 없음
 - － 참고로, 해외직접투자 총량은 2020년 582억달러에서 2022년 820.4억달러로 증가한 후, 2024년 658억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1]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2020~2024년

(단위: 억달러)

	2020	2021	2022	2023	2024
해외직접투자	582	769	820	660	65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각 연도

□ 안 제104조의37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 제3자물류비용과 공제대상인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등의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해외 물동량 및 물류비용의 계산방법 등 시행령 위임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며,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개정안은 공제대상인 기업의 해외 제3자물류비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해외 물동량 및 물류비용 계산방법 등에 대한 요건 등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 공제를 인정받는 제3자물류비용의 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또한, 향후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내 물류기업과 3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한 제조업 기업의 물류비용과 해외 물동량 비중, 해외 제3

자물류비용 등에 대한 현황자료 등이 필요하나,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